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200128				
최초 등록일	2008.08.20	최종 등록일	2024.10.08		

굽는치킨 정보공개서

[계산씨케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채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씨케이

대	丑	번	호	0 8	0 - 9	29	- 2 9	2 9	팩	스	번	<u> </u>	호	0 3 2 - 5 5 1 - 3 3 9 8
가 맹	사 업	운 영 부	'서	가	맹	사	업	부	가 밍	병 부 서	전 호	ㅏ 번 <u>3</u>	₫	080-929-2929
주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 1 길 12(용종동,1 층)													
	www.9292com.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 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계산씨케이의 "굽는치킨")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굽는치킨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형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2013년 10월 01일	사업자등록번호	130-41-42930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 1 길 12
2101111111	계산씨케이	굽는치킨 외 3	(용종동,1 층)
가맹본부		대표자	대표번호
		김정자	080-929-2929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굽는치킨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이미지
굽는치킨	굽는치킨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없음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38,798	46,312	192,486	1,060,758	66,623	66,444
2022 년	331,552	70,194	261,357	1,378,900	82,378	82,378
2023 년	359,783	100,584	259,199	1,398,046	84,366	84,338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판단대구	00	771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정자	대표	2013.10.01~현재	계산씨케이의 굽는치킨 가맹사업	대표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참	상근	비상근	극전구(8)
2023 년 12 월 31 일	1	0	2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굽는치킨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굽는치킨 (20080200128)		2013.10 ~현재	굽는치킨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산씨케이	쫄쫄맨 (20212264)	2021.10~현재	쫄쫄맨 가맹사업	
가장근구	계산씨케이	닭봉씨치즈순살두마리치킨 (20212265)	2021.10~현재	닭봉씨치즈순살두마리치킨 가맹사업	
		탕쓱잘튀기는집 (20190285)	2013.10 ~현재	탕쓱잘튀기는집 가맹사업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굽는치킨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굽는치킨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06년 11월 1일 입니다.

*당사는 2007 년 9 월 14 일 월드코리아로부터 굽는치킨 브랜드를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맹사업시작일은 월드코리아가 최초 가맹점을 오픈한 날입니다.

2. 굽는치킨의 연혁

굽는치킨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월드코리아	굽는치킨	허옥순	2006.11.01~2007.09.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23-10 1 층
거창	굽는치킨	임성덕	2007.09.14~2013.09.30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23-10 1 층
계산씨케이	굽는치킨	김정자	2013.10.01~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 1 길 12 (용종동, 1 층)

3. 굽는치킨의 업종

굽는치킨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업종				
굽는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굽는치킨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굽는치킨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	2년 12월 3	31일	2023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3	13	0	13	13	0	11	11	0
서울	1	1	0	1	1	0	0	0	0
부산	1	1	0	1	1	0	1	1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4	4	0	4	4	0	4	4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1	1	0	1	1	0	1	1	0
충남	2	2	0	2	2	0	1	1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3	3	0	3	3	0	3	3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굽는치킨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굽는치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14	0	1	0	0	13
2022 년	13	0	0	0	0	13
2023 년	13	0	2	0	0	11

6. 기타 가맹사업현황

굽는치킨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영업	정보공개서	가맹	점 및 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업종	표지	등록번호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외식	탕쓱잘튀기는 집	20190285	43/0	43/0	28/0
가맹 개시까지	וס וור ווו ו א וורר	외식	닭봉씨치즈순 살두마리치킨	20212265	10/0	10/0	8/0
본부	계산씨케이	외식	쫄쫄맨	20212264	5/0	5/0	2/0
		외식	굽는치킨	20080200128	13/0	13/0	11/0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굽는치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상한에서부터 하한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00001401	20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VAT 미포함)					AL 등
지역	2023 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산출 가맹점수		
	7887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3.3㎡당	하한	면적3.3㎡당	기정연구
전체	11	62,398	5,148	73,151	7,523	54,111	4,252	11
서울	0			해당입	, ,			0
부산	1			해당입	, ,			1
대구	0			해당입	, ,			0
인천	0			해당입	, ,			0
광주	0		해당없음				0	
대전	1	해당없음					1	
울산	0	해당없음					0	
세종	0	해당없음					0	
경기	4		해당없음					4
강원	0	해당없음					0	
충북	1	해당없음					1	
충남	1	해당없음					1	
전북	0	해당없음					0	
전남	0	해당없음					0	
경북	0	해당없음					0	
경남	3	해당없음					3	
제주	0			해당입	, ,			0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육계공급량을 기초로 하여 닭 판매 매출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추정액 = 닭 공급량 X 17,000 원]

*위의 매출 추정액에는 각 가맹점의 닭 메뉴 외의 매출 및 주류판매에 의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율, 레시피 준수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1개	5,53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굽는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는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가맹비 및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예치할 가맹금은 없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수신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남대문로2가)	02-2073-0987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굽는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면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굽는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1) 배달 매장

(기준면적: 33 m²/단위:원/부가세포함)

		•	·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개별 부담, 기존	시설 최대 활용		
인테리어 설비		배달형 매장의 경우 닥트 공사 기본 ₩550,000~	배달형 매장의 경우 닥트 공사 기본 ₩55,000~		
간판 400x100 (전면), 70x150		천갈이 770,000	천갈이 ₩77,000	가맹	
(돌출)	정보공개서 V-1 의	실측 후 가격결정 (천갈이 +신규제작 ₩1,650,000원)	실측 후 가격결정 (천갈이 +신규제작 ₩165,000원)	계약시 개별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주방기기 및 주방용품	거래상대방	₩4,950,000원	₩495,000원	계약	7114 T C C
굽는치킨 전용 오븐기(1 대)		(A 타입) : 5 단, ₩4,950,000 원 (B 타입) : 365℃ 회전, 8 단, ₩8,800,000 원	(A 타입) : 5 단, ₩495,000 원 (B 타입) : 365℃ 회전, 8 단, ₩880,000 원		
초도물품		₩1,650,000원	₩165,000원		
합계	-	14,520,000(배달형, A타입 선택시)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3.3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크기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해당사항 없음	_
계약금	설비 및 물품 대금의 50%	계약 체결 시
잔금	설비 및 물품 대금의 50%	설치 및 입고 완료 후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굽는치킨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 가맹점사업자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		
가행검사합사	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파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명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 액(단위: 천원, VAT 별도)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판촉 분담비	공동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 비	공동 광고	가맹 본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개별 청구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집기 의	협력업 체(미 정)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 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개별 청구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 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 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굽는치킨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 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굽는치킨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굽는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굽는치킨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치킨류를 굽거나 튀겨서 판매하는 업종	굽는치킨	해당없음
-------------------------------	------	------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역세권, 중심	라고 성적 다는 표기에 여러기여ሪ 기드의 고기
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		
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 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 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0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굽는치킨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이며, 갱신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15일 이내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⑦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까? (예→B, 아니오→D)	
⑧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 100 D 30
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 00일 이건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시 계약기간 1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	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3 조 2 항및 3 항	
변경하는 경우	0 12 2 8 5 0 8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4 조 3 항	
사용하는 경우	4 1 0 0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의 납입 및 기타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25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		· 및 31 조
로 변경하거나 지정거래처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	21조1항~4항	1 항
해하는 경우		1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ᅁᅐᇝᅘ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23 조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0 12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26 조	
경우	20 11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27 조 2 항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30 조 7 항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 영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5 조 21 호	<u> </u>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31 조 1 항 2	ol:
지키지 않는 경우	017107	<u> </u>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1 조 3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101 조 0 8 탁모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 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 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rightarrow 정보공개서 제공 \rightarrow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rightarrow 승인 여부 통지 \rightarrow 양도 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rightarrow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 및 겸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굽는치킨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굽는치킨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굽는치킨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치킨류를 굽거나 튀겨서 판매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굽는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	------

자율 운영 자율 운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심야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서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
의 제한을 두지 않음	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	A 11	
	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표이 표조회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	수시	
제품의 표준화	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000118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	수시	
POS사용	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 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그 심거	부담비율		ㅂㄷ니저귀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 부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상품광고 등		가맹점사업자수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인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		
	짐	기획, 제작 비용	룡 이외는 협의	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 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 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 18조 (경업 및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백만원(1,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33조 제5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제33조 제6항
배상하여야 한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TII 0 0 T TII 7 = 1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7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제37조 제1항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80-929-2929).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1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검토	14 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가맹 계약 체결 지급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IV.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상이함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금전지급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15 일 내외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기자재 및 소품설치	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교육	-가맹점사업자 교육	3	
오픈	오픈 리허설 오프닝 행사	-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0	점포의 시설, 장비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노	ㅇ 인테리어 공사	이전을 수반하지	용 청구(공사계약서	로부터 3년 이	
	후화가 객관적으로	비용(장비·집기의 교	않는 점포환경개선	등 공사비용을 증빙	내에 가맹본부	
	인정되는 경우	체비용을 제외한 실	: 20%	할 수 있는 서류 첨	의 책임없는	
0	위생이나 안전의 결	내건축공사에 소요되	ㅇ 점포의 확장 또는	부) → 90일 이내에	사유로 계약이	
	함으로 인하여	는 일체의	이전을 수반하는	가맹본부 부담액을	종료(계약의	
	가맹사업의 통일성	비용. 단, 가맹사업	점포환경개선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영업양도	
	을 유지하기 어렵	의 통일성과	: 40%	지급(단, 가맹본부와	포함)되는 경우	
	거나 정상적인 영	무관하게 가맹점		가맹점사업자간 별	가맹본부 부담	
	업에 현저한	사업자가 추가		도의 합의가 있는	액 중 잔여기간	
	지장을 주는 경우	공사를 실시함에 따		경우 1년의 범위내	에 비례하는	
		라 소요되는		에서 분할지급 가능)	부담액은 지급	
		비용은 제외)		ㅇ가맹점사업자가	하지 아니	
				가맹본부 또는 가맹	하거나 이미	

	본부가 지정한 자를	지급한 경우	
	통하여 점포환경개	에는 환수 가능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기대부터	시장조사·판촉, 가맹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가맹본부 부담	피어시	
가맹본부 -	점의 경영상 발생하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가영군구 구입	글표시	
	는 문제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 서면 제시				
	및 지도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가맹점 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가맹점사업자	시장조사·판촉,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가맹점사업자	O컨티	
	가맹점의 경영상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부담	필요시 요청시	
	발생하는 문제에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대한 분석 및 지도	개선방안 서면 제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굽는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오픈전 3일, 오픈후 2일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점 전 교육	오픈 전 2일, 오픈 후1 일	무료	최초 계약시 이수
개점 후 교육	상호 협의		영업 중 교육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u> </u>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80-929-292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9292com.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